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가단52868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피 고 1. C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안세훈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095,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102,600,000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7. 5. 25.경 E, 피고 D(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과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70,000,000원, 임대기간 2017. 6. 21.부터 2019.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6.경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대출금액을 85,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C의 피고 D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02,6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6. 21.경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금액 94,050,000원, 보험기간 2017. 6. 21.부터 2019. 6.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9. 5. 21.경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B은 2019.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11. 12. B에게 보험금으로 88,095,082원을 지급하였다.

마. B은 2019.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19. 11. 13.자 질권양도통지서를 통해 피고 D에게 통지하였고, 2019. 11. 14. 위 통지가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경 종료되었고, E는 2019. 3. 26.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1/2지분을 증여하여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0.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0.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근질권자인바,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자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88,095,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19. 12.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5. 2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근질권 담보한도액인 102,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D에게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피고 D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 D은 피고 C에게 2019. 2. 13.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349조 제1항),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7. 6.경 법무법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 법무법인 H는 피고 C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7. 6. 16. 피고 D에게, 2017. 6. 19. E에게 각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2017. 6. 19. 피고 D에게, 2017. 6. 21. E에게 각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 D 등이 위 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9. 2. 13.경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질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명재권